

제2장 사회적 법익 침해

1. 차별 금지 위반
2.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3. 성관련 보도
4. 자살 보도
5. 마약·약물 보도
6. 폭력 묘사
7. 충격·혐오감
8. 여론조사 보도
9. 기사형 광고
10. 기사 제목

1. 차별 금지 위반

사례 15

의결번호	제2021-461호
매 체 명	아시아투데이ASIATODAY닷컴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3월 19일 국제면
기사제목	중국판 된장녀 귀메이메이 다시 감옥행 유력

1. 보도내용

「중국판 된장녀 귀메이메이 다시 감옥행 유력」의 제목

「중국에도 허영 그득한 부정적 의미의 된장녀들이 많다. 어쩌면 한국 성인 여성 인구만큼이나 많을지 모른다.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 이른바 쉬안푸(炫富·부를 과도하게 과시함), 즉 시쳇말로 돈질이 유행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말 그럴지 않나 보인다. (중략)

〈또 다시 감옥행 위기에 내몰린 중국의 대표적 된장녀 귀메이메이〉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중국의 배우 출신 모 여성이 자신의 통장 액수를 과시하였으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면서 그를 ‘중국판 된장녀’라고 지칭하였다.

‘된장녀’는 허영심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명품 등 사치를 일삼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16

의결번호	제2021-685호
매 체 명	위키트리(Wikitree)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5월 10일 사회면
기사제목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술 먹고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보도내용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술 먹고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의 제목

「중국인이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저지른 사건이 공분을 샀다. 해당 중국인은 택시기사의 추격으로 붙잡혔다. 50대 중국인이 음주운전을 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A(52)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특정 국적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보도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50대 중국인이 국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을 전하면서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술 먹고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비록 음주운전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긴 하나 이는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국적에 관한 내용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보도한 것으로 특정 국적에 대한 혐오 및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학대장면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의 공판기일에 검찰이 공개한 동영상에 대해 보도하면서, 포악함과 잔인함이 느껴지는 가학적인 범죄 수법(학대 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비록 해당 내용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폭력이나 학대 정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일반독자에게 이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3. 성관련 보도

사례 18

의결번호	제2021-1044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9월 16일
기사제목	비행기서 음란행위...승객들 눈총에도 멈추지않은 유럽 커플 [영상]

1. 보도내용

「비행기서 음란행위...승객들 눈총에도 멈추지않은 유럽 커플 [영상]」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 추가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럽의 한 비행기 내부에서 남녀가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정상적인 보통사람의 성적 수치심과 윤리감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4. 자살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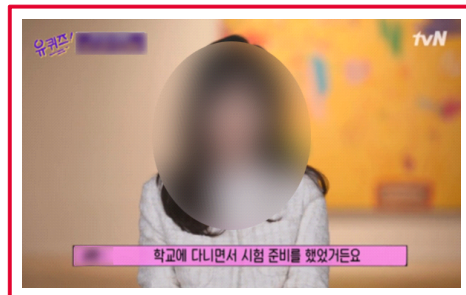
사례 19

의결번호	제2021-295호
매 체 명	포스트쉐어(postshare)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2월 9일 뉴스&이슈면
기사제목	자.살한 '유 퀴즈' ○급 공무원 ○○○ 주무관 현재 인스타 상황..

1. 보도내용

「자.살한 '유 퀴즈' ○급 공무원 ○○○ 주무관 현재 인스타 상황..」의 제목

「자.살한 '유 퀴즈' ○급 공무원 ○○○ 주무관 현재 인스타 상황..」 제하의 사진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했던 ○○○미술관 ○급 공무원 ○○○ 씨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 씨는 사망 전 직장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술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1년 간 미술관에서 ○○○부서 일을 했다...”고 말했다. (중략)

○○○ 씨 사망 소식에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많은 팬들이 찾아오고 있다. (중략)

○○○ 씨는 최연소 ○급 공무원 합격자로 화제를 모은 인물로,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원래는 아나운서가 꿈이었다. 연극영화과를 다니다가 공무원을 준비했다. 잠을 잘 못자고 공부를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보도한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초상, 성명, 나이, 직장, 직위, 직급, 부서, 공무원 시험 최연소 합격 이력 등을 공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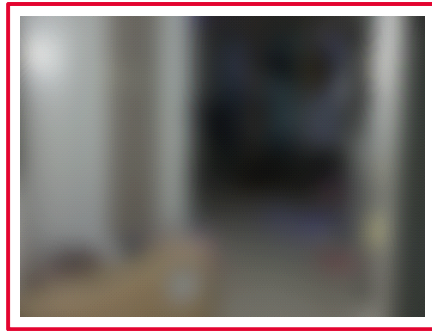
의결번호	제2021-462호
매 체 명	인터넷 중부매일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3월 3일 사회면
기사제목	'성 전환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4

자
살
보
도

1. 보도내용

「'성 전환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자의 사생활 침해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전환수술 후 강제 전역조치된 모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하면서 자살자의 자택 내부모습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자살 장소를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것으로 자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1

의결번호	제2021-582호
매 체 명	연합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4월 28일 최신기사면
기사제목	“코인 투자 실패” 지난 주말 강원에서 20대 극단적 선택

1. 보도내용

「“코인 투자 실패” 지난 주말 강원에서 20대 극단적 선택」의 제목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한 지난 주말 강원도 내에서 코인 투자 실패를 비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판단하여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강원에서 20대 남성이 자살한 사건을 전하면서 자살 동기를 기사 제목에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되는 자살에 대해 보도하면서 충분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하여 면적으로 드러난 특정 동기만을 그 원인으로 단정하여 보도한 것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5. 마약·약물 보도

사례 22

의결번호	제2021-19호
매 체 명	인터넷 중앙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2월 30일 사회면
기사제목	‘말 처럼 힘이 솟는 약?’…합성마약(○○) 밀수 판매 조직 적발

1. 보도내용

「‘말 처럼 힘이 솟는 약?’…합성마약(○○) 밀수 판매 조직 적발」의 제목

「‘말 처럼 힘이 솟는 약?’…합성마약(○○) 밀수 판매 조직 적발」 제하의 사진



「합성 마약의 일종인 ‘○○’를 밀수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판매한 조직이 적발됐다. (중략)
 검찰에 적발된 외국인은 ○○○ 성분(○○○)과 카페인 성분 등이 혼합된 합성 마약 ○○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외국인 근로자 등에 판 혐의다. ○○는 태국에서 ‘말처럼 힘이 솟는 약’으로
 불리며 ○○○보다 싼 가격으로 태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밀거래와 투약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중략)

마약판매조직은 ○○ 1정당 ○원에 밀수해, 중간판매상에게 ○원에 공급했다. 중간판매상은
 이를 국내 투약자에게 ○원 선에 재판매했다.

검찰 관계자는 “○○는 영양제나 건강보조제처럼 알약 형태로 밀수입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며 “충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진천·음성 산업단지 주변 외국인 클럽에서
 판매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환각적 효능, 마약의 형태(사용방법) 및 사진 등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환각적 효능, 마약의 형태(사용방법) 및 사진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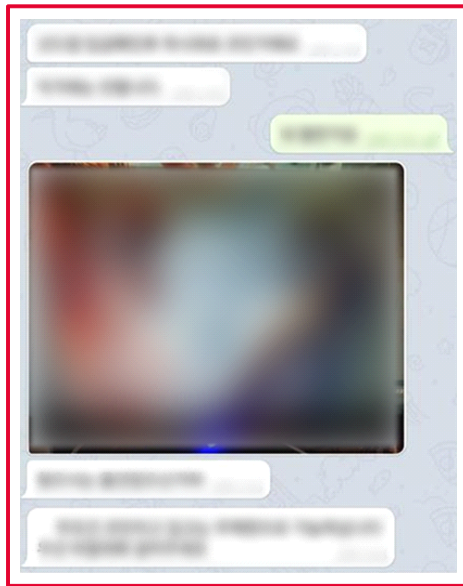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3

의결번호	제2021-463호
매 체 명	인터넷 한국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2월 25일 사회면
기사제목	10대로 번진 '마약 메뉴판'... ○○○ 접속 5분만에 떴다

1. 보도내용

「10대로 번진 '마약 메뉴판'... ○○○ 접속 5분만에 떴다」 제하의 사진



「“○○○ 입금 확인 후 ○○○ 코인 거래요.”

○○○에서 만난 마약 판매업자 A씨는 구매가 처음이라고 말한 본보 기자에게 간단한 거래 절차를 알려줬다. 물건을 미리 정해진 장소에 가져다 놓고(‘○○○’), 가상화폐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입금 확인 후’) 해당 장소의 지도상 좌표를 즉시 알려주겠다는(‘○○○’) 뜻이었다.

각종 마약 은어와 비트코인 가격이 적힌 메뉴판도 전달됐다. “직거래는 하지 않느냐”고 묻자, A씨는 “무조건 코인(가상화폐)”이라고 답했다. 서로 얼굴도 나이도 모른 채 10분 동안 이뤄진 대화였다. (중략)

문제는 구매가 너무 쉽다는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물건 인증’ 사진과 함께 다수의 ○○○가 뜬다. 해당 ○○○로 메시지를 보내면 판매책과 연결되는 구조다. ○○○에서 만난 판매업자 B씨는 “어차피 모든 대화가 익명 기반이고 물건도 장소에 던지면 그만”이라며,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대화하는 동안에도 B씨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매한 고객들 인증 사진이 단체방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마약의 명칭, 구입 가격,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6. 폭력 묘사

사례 24

의결번호	제2021-696호
매 체 명	인터넷 헤럴드경제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5월 4일 국제일반면
기사제목	[영상] 또 '증오 범죄'...美 한인 운영 주류매장서 '벽돌' 폭행

1. 보도내용

「[영상] 또 '증오 범죄'...美 한인 운영 주류매장서 '벽돌' 폭행」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가학적인 폭력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난 영상 게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미국 메릴랜드주 주류매장에 한 남성이 들어와 가게 주인인 한인 자매를 벽돌로 폭행하는 장면의 CCTV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비록 해당 영상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층 심화된 아시아계 증오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필요하다 하더라도, 영상 속 가학적인 폭력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5

의결번호	제2021-862호
매 체 명	살구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7월 1일 오늘의 핫이슈면
기사제목	skt 텔레마케터 욕설 충격적인 통화내용 전문(+막말 녹취록 원본 신상 누리꾼 반응 후기)

6

폭
력
묘
사

1. 보도내용

「skt 텔레마케터 욕설 충격적인 통화내용 전문(+막말 녹취록 원본 신상 누리꾼 반응 후기)」
제하의 링크 내 음성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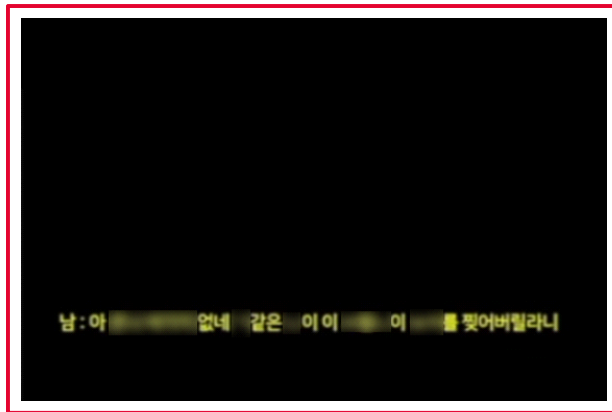
「SK텔레콤의 텔레마케터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고객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은 녹음 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략)

아래는 충격적인 통화 내용 원본주소입니다.

https://

(후략)」

※ 기사 내 링크 클릭 시 나타나는 음성파일



※ 원 보도 및 링크에는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 추가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한 텔레마케터가 고객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통화내용 전문과 녹음파일이 담긴 모 인터넷 게시판 링크를 게시하여 음성을 공개하였다.

비록 해당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욕설 당시의 상황을 알리는 데 필요했다 하더라도, 가학적인 언어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7. 충격·혐오감

사례 26

의결번호	제2021-207호
매 체 명	뉴스1코리아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2월 30일 사회면
기사제목	“강아지 목줄 잡고 요요처럼 빙빙”...학대 영상에 누리꾼 ‘분노’

1. 보도내용

「“강아지 목줄 잡고 요요처럼 빙빙”...학대 영상에 누리꾼 ‘분노’」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영상이 게시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강아지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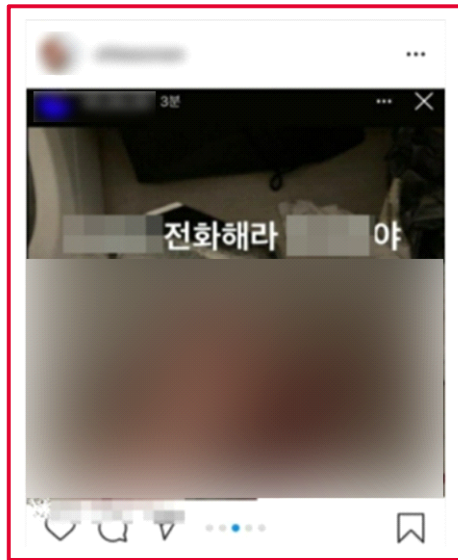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7

의결번호	제2021-28호
매 체 명	sportschosun.com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2월 17일 연예면
기사제목	[SC이슈] ‘박유천 前여친’ 황하나, 마약→자해논란…피투성이 손목 사진 게재

1. 보도내용

「[SC이슈] ‘박유천 前여친’ 황하나, 마약→자해논란…피투성이 손목 사진 게재」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 추가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사진이 게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기업 창업주의 손녀가 자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투성이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부시
정
권
고
현
황제 2
부주
요
시
정
권
고
사
례제 3
부시
정
권
고
전
체
목
록부
록

8. 여론조사 보도

사례 28

의결번호	제2021-225호
매 체 명	인터넷 이데일리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1월 10일 정책면
기사제목	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선별지급이 바람직”(상보)

1. 보도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략)

현재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당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8%가 보편 지급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여론조사의 인용 보도 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히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방식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최소한의 필수기재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부

시
정
권
고
현
황

제 2
부

주
요
시
정
권
고
사
례

제 3
부

시
정
권
고
전
체
목
록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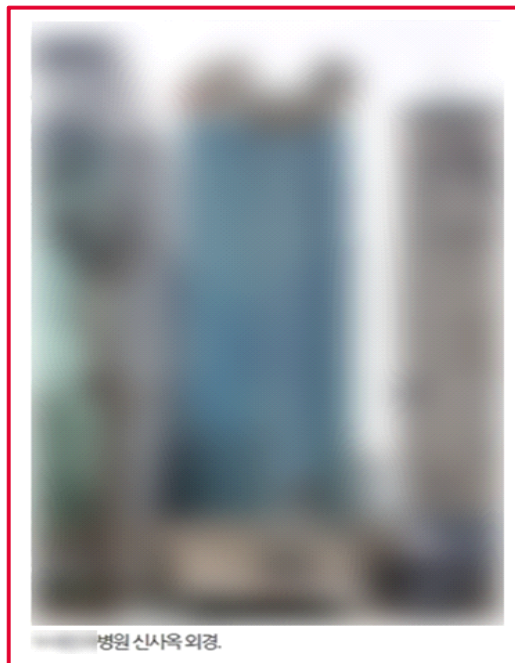
9. 기사형 광고

사례 29

의결번호	제2021-519호
매 체 명	인터넷 의학신문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3월 24일 의원·병원면
기사제목	‘○○○병원’ 첨단시설 갖춘 새 건물로 확장이전

1. 보도내용

「‘○○○병원’ 첨단시설 갖춘 새 건물로 확장이전」 제하의 사진



「○○○병원(병원장 ○○○)은 개원 15주년을 맞이한 올해 3월 22일 강남 ○○○로에 첨단시설을 갖춘 새 사옥으로 확장 이전했다.

○○○병원 신사옥은 강남 ○○역 인근 ○○빌딩으로, 지하 1층, 지상 9개층(면적 2,164평)을 전체 리모델링하여 보다 넓고 쾌적한 진료공간으로 변모했다. (중략)

○○○병원은 시력교정 수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타 병원과 달리 망막, 백내장, 녹내장, 각막, 소아&사시, 시력교정, 성형안과, 드림렌즈 등 눈에 대한 모든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후략)」

「○○○ 기자」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기사와 광고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10. 기사 제목

사례 30

의결번호	제2021-877호
매 체 명	인터넷 세계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7월 26일 사회면
기사제목	“다리 벌려봐” “너무 예뻐서 그래” 지하철 1호선서 흥기 들이댄 50대 男

1. 보도내용

「“다리 벌려봐” “너무 예뻐서 그래” 지하철 1호선서 흥기 들이댄 50대 男」의 제목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노량진으로 오는 급행열차 안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흥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26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는 전날 오후 6시31분쯤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부

시정권고 현황

제 2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제 3 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부 록

